

#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3. 5. .

제 출 자 : 이 천 시 장

## □ 제정이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 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가.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함.

나.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함.

- 1)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
- 2)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~20퍼센트 해당액
- 3) 국·도비 보조금 및 용자금
- 4)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- 5)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

다.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함.

- 1)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- 2) 국토계획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- 3)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·관리를 위한 경비

## 이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(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) 제47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)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·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 및 관리)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(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.

제3조 (재원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.

1.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
2.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~20퍼센트 해당액
3. 국·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
4.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
5.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

제4조 (용도)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.

1.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(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) 및 부대경비
2. 국토계획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
3.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·관리를 위한 경비

제5조 (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)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6조 (준용)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7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도 시 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직위·성명	도시과장 이 종 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도시시설담당 이 연 배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이 호 일 (2363)